



제316회 정례회  
2012. 12. 13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 
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선배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11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- 2006. 9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관이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센터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
- 이에 따른 의견수렴 방안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및 도내 복지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 기능 재정립(안)이 도출됨에 따라,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기능을 개정하고, 운영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중 일부단체와 중복되거나 센터 기능에 불합리한 것을 변경, 통합하고, 신규 기능을 포함하는 등 조정을 통해 이전 9개 기능을 7개 기능으로 조정함.
  -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  
⇒ “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” (대상자가 아닌 교육 내용으로 규정)

-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,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
⇒ “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”으로 통합
  -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
⇒ “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”으로 변경
  - 법인 관련 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·판매  
⇒ 관련조항 삭제 (유관기관과의 중복사업)
  - “시설관리 및 임대사업” 기능 추가
-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
    - 위원을 위원장 포함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2006년 9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관 시 제정된 기존 조례의 기능 조항이 일부 유관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등 중복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이 미흡한 바, 평가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복지계의 지적이 있었음.
- 이에 충북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전문가 논의를 수행하였고, 그 결과의 산물로 센터의 기능 재정립과 운영위원회 정원 확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동기 및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추진 경과
  - 사회복지위원회 개최로 센터 기능재정립 방안 논의(4.6)
    - 참석인원 : 16명(위원 14명, 사회복지정책보좌관, 협의회 사무총장)

- 민간단체 의견을 반영한 소위원회 구성(4.10)
  - 구성인원 : 6명(민간단체 2, 교수 2, 협의회 1, 도 1)
- 4차에 걸친 소위원회 기능재정립 방안 간담회 개최(5.3)
  - 1차(5.3), 2차(5.14), 3차(5.21), 4차(6.4)
- 간담회 결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심의(6.21)

##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“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” 조항을 “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”으로 개정하여, 교육기능을 대상 중심에서 교육 목적 중심으로 명시함.
- “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” 과 “사회복지법인, 자활기관 등의 생산품 전시 판매” 조항은 일선 사회복지, 지역자활센터,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, 충북도 복지역량 강화를 조정하는 센터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타당함.
- 기존 조례에 명시된 “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”을 수행하겠다는 조항의 경우 “사회복지시설 등”이 너무 포괄적 규정이므로 실제 기능 수행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. 따라서 “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”으로의 변경이 타당함.
- 기존에 수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던 “시설관리 및 임대사업”을 기능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함.
-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기존 9명의 위원을 13인으로 증원함.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방식이 민간수탁 방식이므로 증원 시, 지사 추천 3인, 수탁자 추천 3인으로 도와 수탁기관을 안배하여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